

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대표 발의 : 김석규 의원)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의자 : 김석규, 송은영, 정숙남,
공유신 (4명)

1. 개정이유

- 실제 후생복지 운영 방식에 맞추어 조례를 현행화하고, 국민권의 위원회의 「지자체 장기근속·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」(21.4.12. 의결)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후생복지사업 현행화(안 제7조)

나.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 지원 관행 조항 삭제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생일·결혼·출산 축하”를 “생일·결혼·출산 및 자녀의 입학, 졸업에 대한 축하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, 제9호 및 제11호 중 “공무원”을 각각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(시찰) 지원

12. 소속 공무원,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·자녀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사망 시 장례 지원

13.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

14.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)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공무원, 1년 이내 정년퇴직 대상자 및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국내외 시찰경비 지원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공무원의 <u>생일·결혼·출산 축하</u> 격려 지원</p> <p>6.·7. (생 략)</p> <p>8. <u>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·체육 활동 등 지원</u></p> <p>9. <u>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11. <u>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(시찰) 지원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생일·결혼·출산 및 자녀의 입학, 졸업에 대한 축하,</u></p> <p>-----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소속 공무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9. <u>소속 공무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소속 공무원</u>-----</p> <p>12. <u>소속 공무원,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·자녀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사망 시 장례 지원</u></p> <p>13. <u>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</u></p> <p>14. <u>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</u></p>

12. (생 략)

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
등의 이용 지원

15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▣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, 2021.10.8>